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에 따른 규정마련, 임대사용 기간 연장,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 영농편익 도모 및 농가의 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 규정 마련(안 제2조)

- “본점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며, 분소는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둘 수 있다”로 변경

○ 임대농기계 사용허가 기간 연장(안 제8조 제1항 및 제4항)

- 사용허가 기간을 “2일”에서 “3일”로 변경

4.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: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, 제8조의 2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2014. 10. 24 ~ 11. 12)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(안)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기계 임대사업의 분소 설치 및 사용기간 연장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

❍ 본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 및 분소 설치와 농기계 임대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으로서 분소 설치는 본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익 제공은 물론 사용기간 연장으로

❍ 농기계의 안정적 사용을 유도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